

시흥시기업인협회 정관

제정	2007. 11. 07.
개정	2013. 01. 01.
개정	2020. 08. 07.
개정	2023. 03. 23.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명칭)

본 회는 “사단법인 시흥시기업인협회” (이하 “본 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2조 (목적)

본 회는 시흥시에서 생산된 제품을 알리기 위하여 시흥시 기업체 생산품 상설전시장과 직매장을 운영하며 시흥시 소재 기업의 상호 간 협조 및 정보 교환, 관계기관,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기업지원, 지식정보제공 등으로 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소재지)

본 회의 사무소는 시흥시 기업체 생산품 상설전시장에 둔다.

제4조 (사업)

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.

1. 시흥시로부터 수탁받은 업무와 이와 관련된 제반 사업

- ① 시흥시에서 생산된 제품의 전시 및 홍보
 - ② 각종 전시회 참가를 위한 기획
 - ③ 관내 축제와 연계한 전시·홍보전 기획
 - ④ 시장경쟁력과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사업
- 2. 기업 경영에 관한 정보수집 연구, 조사
 - 3. 기업애로해소와 기업지원에 관한 법령 또는 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건의
 - 4. 대학과의 협력, 산업기술연구개발, 교육 훈련, 세미나 개최 또는 참가

6. 회원사 직원의 교육 훈련 및 연수사업
7. 공동브랜드의 개발 및 연구사업
8. 회원사 간의 상호유대 증진 활동
9. 지역 발전을 위한 제반 봉사활동
10. 기타 본 회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

제 2 장 회원사

제5조 (회원사의 구분 및 자격)

- ① 정회원사는 시흥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로써 생산·제조업과 그와 관련된 산업, 건설업, 무역업, 유통업으로 한다.
- ② 특별회원사는 정회원사 외에 본회 사업 목적과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개인, 법인, 단체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 승인을 득한 자로 한다.

제6조 (회원사의 가입)

- ① 본 회 회원사로 가입하고자 할 때는 가입신청서 제출을 기본으로 하며 본회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별도 회원사 가입 신청 없이 자동으로 회원사로 가입된 것으로 본다.
- ② 회원사에는 회원사 가입증서를 발급한다. ③ 특별회원사는 이사회 승인을 득한 후 회원사 가입증서를 발급한다.

제7조 (회원사의 자격상실)

- ① (임의상실) 회원사는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다.
- ② (강제상실) 본 회의 회원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 자격을 상실한다.
 1. 시흥시 소재의 사업장을 폐쇄한 때
 2. 제명되었을 때
- ③ 회원사가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, 본 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사로서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. 단 회원사의 제명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- ④ ③항의 경우 본 회는 이사회 개최일 7일 전에 그 회원사에 제명 사유를 통지하고,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⑤ 본 조 규정에 따라 자격이 상실된 회원사는 기 납부한 각종 회비, 부과금 등의 반환 및 기타 재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.

제8조 (회원사의 권리와 의무)

회원사는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진다.

- ① 회원사의 대표는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하며 발의권과 의결권,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. 단, 회비를 낸 회원사에 한한다.
- ② 특별회원사는 ①항에 대해서는 해당하지 아니한다.
- ③ 회원사는 본 회의 정관 및 제 규정과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④ 회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내야 한다.
- ⑤ 기 납부한 회비는 어떠한 이유로도 반환하지 않는다.
- ⑥ 회원사는 기업발전을 위한 협력 요청 또는 방안제시,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상담 등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 3 장 임 원

제9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

- ①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- 1. 회장 : 1인
 - 2. 부회장 : 2인 이상
 - 3. 이사 : 15인 이상 (회장, 부회장, 당연직 이사를 포함한다)
 - 4. 감사 : 2인 이내
- ② 이사 15인 이상에는 등기이사를 포함하며 등기이사는 회장의 임기 시작 시 구성된 임원중 신청자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.
- ③ 당연직 이사로 기업지원과장은 임명하며 소속 관련 업무 직원을 대리인으로 참석 조치할 수 있다.

제10조 (회장선출 및 감사선임)

회장은 회원사(대표)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- ① 선출된 회장은 부회장과 이사를 구성하여 총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단, 부회장과 이사 추가 선임 시에는 이사회 의결로 총회 승인을 대신한다.
- ② 감사 2인은 총회에서 선임한다.
- ③ 회장은 회원사, 관련 기관, 학계, 사회 덕망 있는 지역 인사 등의 전문가를 이사로 추천할 수 있으며 이사회, 위원회 등의 활동에 참여한다.

제11조 (임원의 임기 등)

-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단, 회장은 1회에 한한다.
- ② 임기 중간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③ 부득이한 사유로 차기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전임 임원은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제12조 (임원의 직무 및 의무)

-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회장 자리가 빈 경우에 ②항에 따른 사람이 본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한다.
- ④ 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, 정책의 전환, 인사의 이동 등 현상 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.
- ⑤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- ⑥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 1. 본 회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
 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
 3. 재산 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발견할 때에는 이를 총회와 주무 관청에 보고하는 일
 4.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 하는 일
 5. 그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- ⑦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내야 한다.

제13조 (임원의 결격사유)

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 회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2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 되지 않은 자

제14조 (임원의 사임 및 해임)

- ① 임원이 사임할 경우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.
- ② 임원이 다음 항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해 해임할 수 있다.
 1. 법령, 협회의 정관 또는 규정을 위반한 때

2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협회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
 3. 직무 태만·품위손상 등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때
 4.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
- ③ ②항의 규정에 따른 임원 해임 청구에 대해 소집된 총회에서 총 재적 회원사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회원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때에는 당해 임원은 해임된다.

제15조 (임원의 보수)

회장을 비롯한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.

제16조 (명예회장·고문·자문위원)

- ① 본 회 회장 임기 만료 시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.
- ② 명예회장의 임기가 끝나면 고문으로 계속 활동한다.
- ③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- ④ 자문위원은 임원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.
- ⑤ 자문위원은 본 회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해 의견을 제시한다.

제17조 (겸직 제한)

명예회장, 고문, 자문위원은 본회 임원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. 단, 명예회장, 고문은 이 사회에 참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결권은 가지지 않는다.

제 4 장 회 의

제18조 (회의의 종류)

- ①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, 위원회로 하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.
- ②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정으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
제 1 절 총 회

제19조 (총회의 구성)

총회는 제5조 ②항의 회원사 대표로 구성한다.

- ① 회원사 대표가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8조에 의거 회원사 소속직원을 대리인으로 하여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② ①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사무국으로 통보하여야

한다.

제20조 (총회의 소집 및 통지)

- 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.
-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5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.
 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
 2.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3. 재적 회원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4. 제12조 ④항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- ③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회원,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 이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, 회원사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, 출석회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회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.
- ④ 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·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-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출석회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.
- ⑥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.

제21조 (총회의 기능)

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본 회의 해산 및 합병
2.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3. 임원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
4.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
5.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
6. 기타 중요사항

제22조 (의사 및 의결정족수)

- ① 회의는 위임을 포함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- ② 회의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 된 것으로 본다.

제23조 (총회 회의록 작성)

총회의 회의내용은 회의록에 기록하고 출석 이사 서명날인 후 사무국에 보관한다.

제24조 (임원의 불신임)

- ①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때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다.
- ③ 해임안은 재적 회원사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, 재적 회원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회비를 낸 회원사에 한한다.
-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.
-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본 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.

제 2 절 이사회

제25조 (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)

- ①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된다.
-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 1.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
 2.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3.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 4. 제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 5. 기본재산의 편입에 관한 사항
 6. 회비의 납부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
 7.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8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 9.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
 10. 회원 제명에 관한 사항
 11. 그 밖에 중요사항
- ③ 회장은 본 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감사, 자문위원 등을 이사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.

제26조 (이사회의 소집)

-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·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전자문

서 또는 서면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
③ 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1.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

2. 제12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
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,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 다만,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, 그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 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.

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.

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⑦ 긴급 또는 위기상황 발생 시 회장은 등기이사회를 소집·운영할 수 있으며, 그 결과는 차기 이사회에 보고한다.

제27조 (의사 및 의결정족수)

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임을 포함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 된 것으로 본다.

제28조 (긴급한 업무의 처리)

회장은 그 내용이 가볍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. 다만, 회장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29조 (서면결의)

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가벼운 사항 또는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이사들의 찬부를 얻어 이사회로 대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.

제 3 절 위원회

제30조 (위원회 구성)

- ① 본 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정으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.

1. 위원장 : 1인

2. 위원 : 3인 이상

③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해당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.

제31조 (위원회 임기 및 활동 범위)

① 각 위원회의 임기는 사업 시행부터 종료 시까지이다.

② 각 위원회의 사업 및 활동은 이사회가 승인한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 해당 위원장이 총괄한다.

③ 그 활동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5 장 재산 및 회계

제32조 (재산의 구분)

① 본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,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.

1.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
2. 부동산

3. 기금

4.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

5.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

② 제1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.

③ 기부 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.

제33조 (재원)

본 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본 회의 운영을 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.

1. 임원회비 및 회원 회비

2.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

3. 기부금 및 찬조금

4. 사업수익금

5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

6. 공공단체의 지원금·보조금

7. 기타수입금

제34조 (잉여금의 처리)

본 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.

1. 이월결손금의 보전
2.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
3.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

제35조 (재산의 관리)

- ① 본 회는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, 재정적·업무적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본 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.

제36조 (회계년도)

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37조 (예산편성 및 결산)

- ① 본 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주무 관청과 긴밀한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- ② 본 회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무 관청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.
- ③ 본 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사업보고서와 결산서,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6 장 사무국

제38조 (사무국 운영)

- ① 본 회에 사무국을 둔다.
- ②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 운영규정에 따르며 회장이 임명한다.
- ③ 사무국의 국장은 회장의 지휘·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④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.
- ⑤ 본 회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 다만,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.

⑥ 직원은 법령 및 인사규정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.

⑦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,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

제39조 (사무국 직제 등)

사무국의 기구, 조직, 직제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은 본 회가 별도로 정한다.

제 7 장 보 칙

제40조 (해산 및 합병)

본 회를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41조 (잔여재산의 처분)

본 회가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 별도 처분한다.

제42조 (정관의 변경 및 제 규정 제정)

① 본 회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,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② 정관에 없는 사항으로서 본 회의 업무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부 칙 < 2023. 03. 23. >

제1조 (시행일)

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